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수)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 14.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1. 14.

라. 상정일자 : 2010. 1. 29(제18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제4항)

-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 학교폭력예방 대책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신설(안 제7조제1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와 구성 (안 제3조제2항·4항)

- 당초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9조제3항1)에 근거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4항의 위원구성은 관련법령²⁾과 같이 구체적으로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항제1호 및 6호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 제2호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능)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가. <u>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u> 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u>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u>	제4조(기능)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가. <u>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u> 나. <u>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u>

○ 회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대책 관련 회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회의를4)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점차 증가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워 쓰기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 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현 위원회 명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담당국장인데 인천광역시

4) 제2조 (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교육청생활지도 담당국장으로 개정할 경우 보직 변경시 계속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 답 변 >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나. 반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

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판사·변
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 아.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
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 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
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기본법 41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47조,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설치와 구성)①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p>
<p>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청소년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판사·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신설></p> <p>1. <u>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u></p> <p>2. <u>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u></p> <p>3. <u>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u></p> <p>4. <u>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u></p> <p>5. <u>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6. <u>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7. <u>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2. <신설></p>	<p>제4조 (기능) -----</p> <p>--</p> <p>1. <u>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u></p> <p>가. <u>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u></p> <p>나. <u>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u></p> <p>다. <u>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u></p> <p>라. <u>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u></p> <p>마. <u>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바. <u>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u></p> <p>사. <u>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u></p> <p>아. <u>그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2. <u>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u></p> <p>가. <u>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u></p> <p>나. <u>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u></p>
<p>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u>시</u>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 (수당 등) ----- <u>--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u> ----- ----- ----- -----.</p>
<p>제12조 (설치와 구성) <u>기본법 41조의</u> <u>규정에 의거</u>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제12조 (설치와 구성) <u>기본법 41조에</u> <u>따라</u> ----- ----- ----- ----- -----.</p>
<p>제14조 (사업) ① (생략) 1~6 (생략) 7. <u>기타</u>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생략)</p>	<p>제14조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협의회 가입회원과의 협력) ① 협의회의 가입회원은 기본법 제3 조 제8호와 <u>동법시행령 제2조</u>에서 정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정관상 청소년 육성과 선도 보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② <u>협의회는 기본법 제40조의</u> <u>규정에</u> <u>의한</u>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와 지원체제를 확립한다.</p>	<p>제16조 (협의회 가입회원과의 협력) ① -----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u> ----- ----- ----- ----- -----. ② ----- <u>기본법 제40조에 따라</u>----- ----- -----.</p>
<p>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u>기본법 제8조</u>의 <u>규정에 의거</u>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9조 (학자금 지원) --- <u>기본법 제8조에 따라</u> ----- ----- ----- ----- -----.</p>

